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.06.16 (목) 16:00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-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8일

3. 제안 이유

○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말, 사슴 및 가축이외 동물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, 급식용 축산물 등 검사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축검사 수수료(별표) 인상
 - 소 : 1,200원 → 3,000원
 - 돼지 (양, 염소 포함) : 400원 → 1,000원
- 나.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
 - 말, 사슴 : 3,000원
 - 가축이외의 동물 : 1,000원
- 다.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(안 제6조)
 - 도내 소재한 보육시설, 유치원 등의 명의로 급식용 축산물의 검사의뢰시: 50% 감면

-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: 30% 감면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법령 에 따라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 내 소재한 보육시설, 유치원 그리고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소·돼지 등에 대한 도축 수수료를 각각 1,200원에서 3,000 원으로, 400원에서 1,000원으로 150%씩 인상한 이유, 둘째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한 이유 그리고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이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함.